

대한치주과학회 회칙

제정	1960.	10.	7
개정	2001.	3.	22
개정	2008.	3.	19
개정	2015.	3.	11
개정	2018.	12.	13
개정	2019.	12.	26

제 1 장

총칙

제1조(설립근거) 본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58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대한치주과학회 (The Korean Academy of Periodontology)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광역시 및 각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목적

제4조(목적) 본회는 치주과학의 향상발전과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장

회원

제5조(회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항(정회원) 정회원은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치과의사로서 상임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승인을 거쳐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자.

- 2항(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 자
- 3항(준회원)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
- 4항(국제회원)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외국 치과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국제회원에 대한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 4 장

기구 및 임원

제6조(임원 및 이사회)

- 1항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본 학회의 회무를 각각 분장 처리한다.
 - 1. 회 장 : 1명
 - 2. 부회장 : 8명 이내(편집장 포함)
 - 3. 편집장 : 1인
 - 4. 이 사 : 30명 이내
(총무, 학술, 재무, 국제, 편집, 공보, 보험, 섭외, 수련고시, 정통, 법제, 자재, 연구, 후생, 기획, 대외협력, 정책, 홍보, 평이사 포함)
 - 5. 이사의 업무집행을 실무보좌하기 위한 실행이사를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 6. 감 사 : 2명
- 2항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실행이사로 구성한다.
- 3항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불참의 경우 위임장으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제7조(확대이사회)

- 1항 확대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실행이사, 자문위원, 감사 및 각 시도지부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명예회장이 의장이 된다.
- 2항 확대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제8조(고문 및 자문위원)

- 1항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을 도와 본회 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 2항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 한다.

3항 본회의 전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4항 본회의 직전회장과 명예회장을 자문위원으로 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5항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제9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전반을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잔여 임기동안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단, 차기회장이 선출되었을 경우, 차기 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제11조(이사) 각 이사는 각기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총회시 회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직)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이사의 소관업무를 정하고 이를 관장한다.

총무이사 :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제반사항

학술이사 : 학술 업무에 관한 사항

재무이사 : 재정 업무에 관한 사항

국제이사 : 국제 업무에 관한 사항

편집이사 : 학회지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

공보이사 : 대외홍보업무 및 소식지발행에 관한 사항

보험이사 : 의료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섭외이사 : 대외 섭외활동에 관한 사항

수련고시이사 : 수련교육 및 인정의, 전문의 관련 제반사항

정통이사 : 학회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

법제이사 : 학회회칙 및 각종 규범 제정에 관한 사항

자재이사 : 약제, 재료, 기자재 및 정보에 관한 사항

연구이사 : 학회의 학술연구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홍보이사 :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후생이사 : 회원 상호간 및 임원회의 상조, 복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획이사 : 학회 장단기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대외협력이사 : 대외유관기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정책홍보이사 :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평이사 : 회장, 부회장, 위원회의 업무를 실무 보좌

실행이사 : 각위원회 및 이사의 업무를 실무 보좌

제13조(위원회)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감사)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제 5 장

선거

제15조(선임)

1항 회장, 감사는 확대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총회의 인준을 못 받고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회장 인준 시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2항 부회장, 이사 및 실행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6조(회장선거)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 만료 1년 전 확대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7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월 1일 임기를 시작한다.

제 6 장

회의

제18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확대이사회 및 위원회로 한다.

1항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총회 전 또는 동회 기간 중에 개최하며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2항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3항 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제 7 장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19조(의무) 본회 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본회 제사업 및 회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0조(권리) 본회 정회원은 본회의 제회의시 발언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 발간의 각종 서책 및 제증명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징계) 본회 회원으로서 의료도덕상 또는 사회 윤리적으로 과오를 범하였을 시는 이

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동의로서 징계 또는 제명한다.

제22조(자격상실) 본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시는 총회의 의결 권은 상실 되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다.

제23조(자격소실) 전공의, 군진회원은 해당기간이 종료하면 그 해당자격이 자동 소실된다.

제 8 장

회비

제24조(재정수입)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써 총당한다.

제25조(재정관리) 현금은 회장명의 혹은 학회명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증서는 재무 이사가 보관한다. 재정 관리는 별도의 재무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26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부칙

제27조(시행) 회칙은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개정할 수 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인준과 동시에 발효한다.

제28조(각종운영내규) 학회 운영을 위하여 “대한치주과학회 운영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29조(일반관행)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요한다.